

제226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 (2017.6.26.)

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7. 5. 31.

나. 발 의 자: 박희순·김종두·표주숙·변상원·이흥희·강철우·최광열·
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11명)

다. 회부일자: 2017. 6. 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6. 22.

2. 개정이유

-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조항 등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 근거 규정(안 제3조제2항)

나. 보상심의회의 서면심의 조항 신설(안 제13조제1항)

다. 보상심의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조항 정비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조항 등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일반적인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 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 없음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7. 5. 31.

나. 발 의 자: 박희순·김종두·표주숙·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
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11명)

다. 회부일자: 2017. 6. 8.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6. 22.

2. 개정이유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감사·조사의 대상기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5조제1항제6호)
- 현행: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 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대상기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일반적인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 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 없음